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4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박준태 · 김승수 · 조지연  
박성민 · 최수진 · 박충권  
강승규 · 김소희 · 최보운  
박덕흠 · 조배숙 · 서지영  
이만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 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난임치료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1항 전단에  
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  
의 100분의 5을 부담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u>제44조의2(난임치료의    본인일부</u> <u>부담금에    대한    특례) 제44조제</u> <u>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u> <u>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로</u> <u>난임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가</u> <u>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해</u> <u>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u> <u>의    5를    부담한다.</u>